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건본주택 운영안내**
 -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건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guri>)으로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구리역 홈페이지 (<http://www.hillstate.co.kr/s/#guri>)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코로나 지역 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기간에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건본주택 관례예약은 가능하며, 힐스테이트 구리역 홈페이지 (<http://www.hillstate.co.kr/s/#guri>)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건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건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백신 미접종자 및 방역패스기간 말료된 자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상담 전화(☎031-554-4412),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구리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I. 공급개요

- **단지명** : 힐스테이트 구리역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565세대
[특별공급 118세대 (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2세대, 신혼부부 47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합계	
기관별 세대수 배정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외	1(5)	0	0	2(10)	0	0	3(15)
		장기복무제대군인	1(5)	0	0	1(5)	0	0	2(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0	0	2(10)	0	1(5)	4(20)
	중소기업근로자		1(5)	0	0	2(10)	1(5)	0	4(20)
	경기도	경기도	1(5)	1(5)	0	2(10)	0	1(5)	5(25)
		서울특별시	1(5)	0	0	1(5)	0	0	2(10)
		인천광역시	1(5)	0	0	1(5)	0	0	2(10)
계		7(35)	1(5)	0	11(55)	1(5)	2(10)	22(110)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II.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2년 2월 24일(목) (12시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2월 17일(목)	*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 (http://www.hillstate.co.kr/s/#gur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2022년 2월 18일(금)	* 당사 홈페이지 (http://www.hillstate.co.kr/s/#guri)
특별공급 청약 신청	2022년 2월 28일(월) (시간 :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가능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2년 3월 11일(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가능
자격확인서류 제출일	2022년 3월 16일(수) ~ 3월 19일(토) (4일간) (시간 : 10:00 ~ 17:00)	* 장소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계약 체결	2022년 3월 22일(화) ~ 3월 25일(금) (4일간) (시간 : 10:00 ~ 17:00)	* 장소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여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 |
|--|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습니다.
 -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③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3항(경기도 구리시 및 수도권)에 따른 공급대상인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추천 가능하며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 제외)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p>■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 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단,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IV.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자격확인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신청 시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무주택/계약자)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복무확인서	배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 **사업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s/#guri>

■ **분양문의** : 031-554-4412

힐스테이트 구리역 특별공급 배정현황

1. 배정현황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059.7000A	59A	74	7	7	14	2	7	37	37
059.8100B	59B	18	1	1	3	0	1	6	12
059.8200C	59C	7	0	0	1	0	0	1	6
074.6800A	74A	110	11	11	22	3	11	58	52
074.6700B	74B	17	1	1	3	0	1	6	11
084.8400A	84A	24	2	2	4	0	2	10	14
합계		250	22	22	47	5	22	118	132

2. 관련자료

구분		배정 세대		근거자료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10%) 22세대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외	3	15
		장기복무제대군인	2	1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4	20
	중소기업근로자		4	20
	장애인	경기도	5	25
		서울특별시	2	10
		인천광역시	2	10
합 계		22	110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예비추천인의 경우 각 타입별 300%이상 배정합니다.